2026년 제7호 수록

원산지

CASE 1 참치

판정번호
H355349

물품 정보

형태

- 내장·아가미·머리 및 꼬리를 제거한 신선·냉장 참치

제조 공정

- 참치의 어획 수역, 어획 선박의 국적 및 가공 국가는 다음과 같음

선박 국적	중국 및 미크로네시아연방
어획 수역	마셜제도공화국(RMI)의 배타적 경제수역(EEZ)
가공 국가	RMI의 육상 가공시설에서 추가 가공(머리 및 꼬리 제거, 세척, 포장)

CBP 판단

- 미국 국제무역법원(CIT)은 수산물의 원산지 결정에 **선적국법주의(Law of the Flag)**가 적용된다고 판결(1988)
- 다만 어획 이후 다른 국가에서 **실질적 변형**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**해당 가공국이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**
- 쟁점물품은 **중국 및 미크로네시아연방 국적**의 어선에 의해 **RMI의 영해 밖에 위치한 EEZ에서 어획**
- RMI에서 이루어진 **추가 가공**은 **참치의 명칭·특성·용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경미한 공정**으로,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
- 따라서 어획 선박의 국적에 따라 참치의 비특혜원산지를 중국 또는 미크로네시아연방으로 판단

영해 밖 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은 다른 국가에서 실질적변형이 없다면 선박 국적에 따라 원산지 결정

미국 원산지 결정

참치를 어획한 선박의
국적(Flag State)을
비특혜원산지로 판단